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재난안전신기술 지정 신청이 있어 신청기술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동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4일

한국방재협회장

1. 신청인

법인명	케이에스티이엔씨(주) (대표 박상태)
사업자(법인)등록번호	180111-*****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재송동) 2207호(재송동, 큐비이센텀)

2. 기술명 : WB접합구조 및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

3. 기술내용(요약)

- 기술은 고정용 케미컬 앵커와 규격화된 베이스플레이트, T형 및 U형으로 최적화된 연결부재,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의 구성으로 모듈화된 접합구조와 이를 이용한 내진보강공법으로 지진 발생 시 보강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와 내진보강용 철골부재가 일체거동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강대상 건축구조물에 부여되는 수평하중에 효율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진보강기술이다.

4. 기술범위

- 1. 기존 부재와 보강용 철골 부재 사이를 고정용 앵커, 베이스플레이트, T형 및 U형 연결부재와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구성된 접합구조로 끼움골조 내진보강과 모멘트골조를 외부면에 부착하는 보강 방법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각 보강 방법에서 연결부재는 주로 다음 형태로 구성됨. ① T형 연결부재를 보강용 철골부재의 플랜지에 볼트로 결합하고 연결부재와 베이스플레이트를 용접결합함. ② U형 연결부재를 보강용 철골부재의 웨브에 볼트로 결합하고 연결부재와 베이스플레이트를 용접결합함. 2. 베이스플레이트와 연결부재를 규격화하여 접합구조를 모듈화하여 접합구조 모듈이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일정범위의 가동성 보유함. 3. 베이스플레이트와 보강대상 부재면 사이에 간격을 뒀으로써 콘크리트면 굴곡 편차를 흡수하고, 시공 중 베이스플레이트의 유동 공간을 확보하여 보강골조(철골프레임)와 밀착용접 시킴 4. 접합구조가 매립되도록 기존부재와 보강철골부재 사이를 고강도 무수축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킴.

5.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한 사항은 평가 전문기관인 한국방재협회(02-6952-93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 가. 이해관계인 의견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나. 이해관계인 서약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2호의 붙임1 서식)
- 다. 신청서 열람 요청서(세부운영규정 별지 제4호 서식)
- 라. '가'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 자료

7. 제출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과(044-205-4187)
한국방재협회 연구기술실(02-6952-9388)

※ 이해관계인 의견 반려 사항

「재난안전기술평가 세부운영규정」 제14조 제2항 및 3항에 의거,

-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 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인정되지 않음.
- 이해관계인의 기술이 타인의 기술로써 직접 당사자가 아닌 경우
- 기술 도용 등 산업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 요청한 경우
- 이해관계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